

영등포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6. 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06호로 2013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위원 구성 및 구성비율 변경(안 제6조제2항)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 100분의 45 이상
-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 100분의 20 이하
-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 100분의 15 이하
-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
-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

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일부삭제

(안 제7조제1호, 안 제7조제5호, 안 제12조제2항)

1)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이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구성비율이 변경되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이 삭제됨.
- 본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위원회 구성과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구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요기관인 만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구의회의 의견수렴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6.30]